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**'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' 제공**  
 = 축산법령 준수사항, 축산환경 소독 및 전기안전 점검 등 =

《 주 요 내 용 》

-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법령의 시설·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, 축사 내외부 소독, 전기안전 점검사항 등을 체계화한 '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'를 마련하여 축산농가에게 제공
- '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'는 축산법령 준수여부 자가점검표,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,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세 가지 분야로 구성
  - ① '축산법령 자가점검표'는 축산법 등 6개 법령\*의 준수사항으로 구성
    - \* 축산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약취방지법,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, 축산물 위생관리법 6개 법률
  - ② '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'는 축사 내외부,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소독·방역·청소 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
  - ③ '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'는 전기배선 관리, 누전차단기 작동상태,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
- 축산농가들은 자가진단 안내서를 활용하여 스스로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, 분뇨관리 및 약취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,
  -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, 악취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9.24(목)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, 약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·외부 소독·방역 사항,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'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'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.
- 그간, 축산농가들은 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·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.
-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, 전문가·축산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령 자가점검표,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,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였다.
  - ① '축산법령 자가점검표'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, 분뇨 및 약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\*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하였다.
    - \* 축산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약취방지법,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,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
    - 한·육우,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, 30개 내외의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    - \* (7개 분야) 축산업 영업, 사육시설·소독설비·방역시설 설치기준, 가축의 이력·위생 관리, 축산약취 관리, 농가 준수사항
    - \* (30개 항목)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, 소독 실시 방역시설 설치기준 준수, 동물의약품 적정 사용 등
  - 축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하여 농가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마련하였다.

- ② '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'는 축사 외부, 축사 내부,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해 소독·방역·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하였다.
- 매주 수요일, 「축산환경 소독의 날」에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축사 내·외부 소독·방제 및 청소, 취약시설 등을 점검·보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
  - 이를 통해 축사에 대해 상시적인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유지하고, 축사 내·외부 소독, 구서·구충 방제,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.
- ③ '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'는 전기배선 관리, 누전차단기 작동상태,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- 축사화재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내 전기안전 상황을 점검하여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-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, 농협,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,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\*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, 농·축협 등 교육운영기관(191개소)에서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축산업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24시간, 축산업 신규 등록을 하려는 자는 6시간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
-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통해
- '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,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, 가축분뇨 관리, 축산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,
  - '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'이라고 밝혔다.

## 축산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 등을 정리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

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하여 농가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
**축산법령 자가점검표**

자가 진단항목				
축산업 영업	축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?</li> <li>○ 3개월 이상 휴업, 폐업 등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까?</li> <li>○ 3개월 이상 휴업, 휴업 후 재개업,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까?</li> <li>○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였습니까?</li> <li>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?</li> </ul>		
	사육 시설	축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축사육규모가 허가 또는 등록된 축사 면적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성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?</li> <li>○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?</li> <li>○ 외부에서 들어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까?</li> </ul>	
		가축분뇨법	가축분뇨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출시설(축사)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였습니까? *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는 대상 시설은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예외 적용</li> <li>○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?(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제외)</li> <li>○ 퇴비사,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?</li> </ul>
			가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까? * 50~1,000㎡ 미만의 시설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,</li> <li>○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? * 500㎡이하의 한옥우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</li> <li>○ 농장 출입자를 위한 전용의복·신발 등을 비치하고, 농장 출입시 착용하고 있습니까?</li> <li>○ 농장·축사·창고·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까?</li> </ul>

방역 시설	방역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문객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?</li> <li>○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?</li> <li>○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? *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</li> <li>○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?</li> <li>○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? * 고도 차이, 개천,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</li> </ul>	
		농가 준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「약사법」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(이하 "의약품등"이라 한다)만 사용하고 있습니까?</li> <li>○ 「약사법」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?</li> <li>○ 「약사법」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(대상, 용법·용량, 주의사항 등)을 준수하고 있습니까?</li> <li>○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 기간은 준수하고 있습니까?</li> </ul>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출하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는 발급받았습니까?</li> <li>○ 소의 출생·폐사, 양도·양수,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5일 이내에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신고하였습니까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정기간 사료 급여를 중지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? * 12시간 이상 절식(다만, 기금류는 3시간 이상)</li> </ul>			
위생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물 위생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물 위생법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물 위생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물 위생법</li> </ul>	
악취 관리	가축분뇨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?(다만, 악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) *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(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기준)</li> <li>○ 가축분뇨,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, 악취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? *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(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)</li> <li>○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? *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(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)</li> </ul>	

###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

축산환경 소독의 날	축사 외부	◆ (외부 차단) 축사외부 및 차단시설 주변 잡초 제거 및 쓰레기, 더미 수풀 제거 폐사포포대 및 폐가사제 장터 등
		◆ (조류 등 야생동물 차단)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,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, 벽면 조밀망 설치, 건물 입구에 방충망 등 설치(환풍기,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), 조류 기피제 등 살포
		◆ (설치류 등 구서) 사료찌꺼기 등 먹이제거, 농장 내부 배수로, 축사 및 사료 보관창고, 깔짚 보관창고 등 틈새 메우기, 미끼통 및 쥐덫 설치,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 - 축사 울타리에 생석회폭 50cm 이상 등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축사 내부 및 퇴사·외부에 만성실사제 살포 * 만성실사제 살포시 가축의 허가 달지 않고 바람에 날려 가축이 먹지 못하도록 주의
		◆ (파라모기 구충) 축사 내외부, 처리시설에 끈끈이 트랩(trap), 성충유인 트랩(혹설탕+효모+살충제 0.3~1.0%), 해충랩프 설치, 웅덩이 제거 - 유충 발생시 톱밥, 왕겨 등으로 덮기(약 10~20cm) 또는 석회석 살포(6kg/m <sup>2</sup> ) * 살충제는 가축의 허가 달지 않는 통로 및 벽면 등에 살포하고 퇴비더미에 살유충제 살포시 친환경농자재만 사용
		◆ (생석회) 축사 진입로 약 2평* 면적에 생석회를 평당 2kg 살포(평당 1kg) * 5톤 차량의 폭 및 바퀴 1회전 감안하여 폭 2.5m, 길이 2.5m 권장 - 3일 마다 평당 100g 이상 추가 살포(차량 운행정도, 오염상태 감안 결정)
		◆ (분뇨 관리) 축사 외부 및 처리시설 외부에 유출된 분뇨(방치 축분) 제거
	축사 내부	◆ (장비) 사용하는 장비는 매일 세척·소독한 후 농장내 물품보관시설에서 보관
		◆ (작업복) 청소시 착용했던 작업복, 모자, 신발 등은 매일 소독하고 2~3일 간격으로 세탁
		◆ (소독) 사료 급이조 및 급이라인, 급수조 및 급수 니플 등 청소 및 소독(수시)
		◆ (자재) 주사기, 인공수정기, 노출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은 주기적(주 2~3회)으로 세척·소독하고 내부 물품보관함에 보관
		◆ (청소) 백면지붕의 거미줄, 이동통로 및 케이지(스톡)의 땀띠지, 사료 찌꺼기 등을 청소(주 1회 이상) * 컨베이어벨트에 붙은 땀띠지 제거
		◆ (분뇨 관리) 축사 바닥의 유출방지턱 설치(축사 바닥 50cm 높이 이내) - 분뇨가 유출방지턱 또는 슬러리 피트 높이의 2/3를 넘지 않도록 관리
		◆ (깔짚 관리) 수분정도 60% 내외 유지, 깔짚이 가축의 몸에 묻거나, 밟고 이상 빠지면(수분정도 70% 이상일 경우) 톱밥 등 추가 살포(축사 바닥에 톱밥 5cm 살포시 38일, 15cm 80일 이용 가능) * 깔짚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 및 분뇨가 손가락 사이로 묻어 나오면 수분 70% 이상으로 판단 - 관리가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(주 1회 이상)
◆ (미생물제제) 축사 바닥 깔짚, 돈사 바닥(슬러리피트) 등 가축사육 공간에 미생물제제 살포(주 1회 이상 권장) * 물 1톤에 미생물 2~5ℓ를 혼합 후 축사 및 퇴사 3.3m(1평) 당 1ℓ 살포, 액비시설에 톤당 0.2~0.5ℓ 이상 투입		
가축분뇨처리시설	◆ (교반관리) 축사바닥 깔짚을 관리가트랙터 등으로 교반관리(주 1회 이상)	
	◆ (설치류, 조류 유입방지) 퇴사 등 틈새 메우기, 미끼통 및 쥐덫 설치, 허수아비 및 반사판 설치, 벽면 조밀망 설치, 건물 입구에 망충망 등 설치	
	◆ (시설점검) 퇴비, 액비, 정화, 악취저감시설의 외벽의 균열, 고액분리실(양동, 찌소) 및 컨베이어벨트(가급) 밀폐화 및 악취 누출 점검보수, 정상작동(24시간) 등 점검 및 보수	
	◆ (퇴사 등) 유출방지턱 설치(퇴사 2m 이내)	
	◆ (퇴비더미 관리) 수분정도 60% 내외 유지, 수분정도 70% 이상일 경우 톱밥 등 추가 살포	
	◆ (미생물제제) 퇴비더미에 미생물제제 살포(주 1회 이상 권장)	
	◆ (교반관리) 퇴비더미를 트랙터, 스키드도더 등으로 교반관리(주 1회 이상)	
◆ (액비관리)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로 구분 관리하고 고액분리된 액비물만 생산시설에서 발효(중숙하여 저장 시설부숙)로 이용(생분해율은 30%/분, 24시간 3급 단 과숙기 등의 경우 간헐적 공급 가능)		

###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

안전진단 항목
1. 전기배선의 정상 여부 - 노후, 파손 및 훼손 시 부에 표시
2. 환풍기, 모터 주변 청결 여부 - 주변에 먼지 등 이물질 있을 시 부에 표시
3. 콘센트 주변 청결 등 여부 - 콘센트 주변에 분진, 먼지, 습기 등 이물질 있을 시 부에 표시
4. 분전반* 및 플러그, 개폐기, 차단기 정상작동 여부 * 축사에 유입되는 전기를 배분하는 장치
5. 전력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 -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열기구(보온등 등) 사용 시 부에 표시
6. 축사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여부 - 쓰레기 소각 및 인화성 물질 보관 시 부에 표시
7. 정기적인 안전점검 여부
8. 누전차단기 작동여부
9. 축사 내 소화기 구비 및 사용법 숙지와 정기적 점검 여부 9-1 소화기 구비 및 압력계이지 녹색 확인 9-2 사용법 숙지 여부
10. 축사 내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- 소화기, 스프링클러, 호스틀 소화전 또는 고압용 펌프
11. 화재를 대비한 경보형 감지기(센서) 설치 여부
12. 전기기구의 접지 여부 또는 접지형 콘센트 사용 여부
13. 물기가 있는 곳의 방수형 배선기구 사용여부